서울특별시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2023년도 1/4분기

# 자체 감사결과 보고

2023. 4.

감 사 위 원 회

# 1. 캠핑장 및 유원·놀이시설 안전 점검

## 1. 점검배경 및 목적

○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캠핑장 등 야외 활동객이 증가하고,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관리시설의 사전예방적 점검 필요

○ 중대시민재해 대상 유원시설 예방점검을 통한 시민 이용객 안전 강화

## 2. 점검 추진내용

○ 대　상 : 市 소유 캠핑장 및 유원·놀이시설 15개소 샘플 점검

- 푸른도시여가국, 서울대공원 등 소관 캠핑장 16개소 중 관내 8개소
- 유원시설 2개소 중 1개소(어린이대공원)
- 푸른도시여가국, 한강사업본부 등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28개소 중 6개소

○ 기　간 : 2022. 9. 19.(월) ~ 10.14.(금) (기간 중 18일)

○ 인　원 : 안전감사1팀장 등 6명 (외부전문가 3명)

○ 범　위 : 캠핑장 및 유원·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등

## 3. 점검중점

○ 야영장업 관련법령 상 등록기준, 안전 및 위생기준 충족 여부

○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, 보험가입 적정, 안전관리자 지정 등

○ 유원시설 업자 준수사항,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유무 등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권고 | 기관 경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현지 시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분상 조치인원 | 재정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회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95 | | | | | 5 | | | 5 | | | | 16 | | 74 |

# 2.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

## 1. 점검배경 및 목적

o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

## 2. 추진내용

o 점검대상 : 우리 시 및 소속기관, 자치구에서 발주한 10개 건설공사

| 발 주 처 | 공사장 수 | 대상 공사현장 |
|---|---|---|
| 계 | 10 | |
| 도시기반시설본부 | 4 |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건립공사, ■■■■■■ 건립공사, △△△△△ 건립공사, ▲▲▲ ▲▲▲▲▲ 조성사업(▲▲▲▲ ▲▲▲▲ ▲▲▲▲공사) |
| 한 강 사 업 본 부 | 2 | ▽▽▽ ▽▽▽▽ 설치공사, ▼▼▼▼▼ 조성공사 |
| 상수도사업본부 | 1 | ▣▣▣▣▣(▣지) ▣▣ ▣▣ 공사 |
| 서울시립대학교 | 1 | ◈◈◈◈◈◈◈ ◈◈◈◈◈ 건립공사 |
| 강 북 구 | 1 | ◐◐◐ ◐◐◐◐◐◐◐◐ 신축공사 |
| 강 서 구 | 1 | ⦿⦿⦿⦿⦿⦿ 건립공사 |

o 점검기간 : 2022. 8. 17.~ 8. 30.(기간 중 6일)

※ 을지훈련 감안해 점검 실시

o 감사인원 : 하도급감사팀장 외 4명(명예하도급호민관 연인원 10명 참여)

## 3. 감사중점

o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

o 근로계약서·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·현장별 보증서 등 작성 실태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 / 천원 /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현지 조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분상 조치인원 | 재정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환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26 | - | -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6 |

# □ 총 평

## □ 점검결과

○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·임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및 소속기관, 자치구 발주 10개 공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,

○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(재하도급 등)는 발견되지 않았으나,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지급,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행, 인력관리 등 분야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, 점검기간 중 합의서 작성을 통해 자재, 장비대금, 노임 등 지급 예정 금액 2,440백만 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하였음

## □ 주요 지적사항

○ 하도급지킴이 미사용,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,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,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업무 처리 부적정 및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미사용 등 다수의 하도급 관리 소홀이 지적됨

| 계 |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|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|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|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업무 처리 부적정 |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6건 | 9건 | 4건 | 3건 | 5건 | 1건 | 4건 |

※ 기타(4건)는

-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 지연 지급 1건/ 노무비 지급업무 부적정 1건
-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 2건

## □ 조치사항

○ 지적사항 26건 조치완료

○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·교육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(발주부서)에 통보

# 3. TBS 재난방송 부실의혹 등 조사

## 1. 조사배경

○ 고충민원 : 1차 서류접수(2022. 8. 17.), 2차 서류접수(2022. 9. 5.)

- 청구자 : ○○○ 서울시의회 의원(□□□위원회)

○ 제보요지

- (1차) TBS가 재난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미흡
- (2차) 뉴스공장 ○○○ 출연방송 관련 TBS 대표 등 관계자 조사

<세부내용(1차)>

- TBS는 2022.8.10. 재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음
- TBS가 8. 10. 뉴스공장을 방송한 것은 「방송통신발전법」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직무태만에 해당한 것임
-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TBS 방송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여 감사를 청구함

<세부내용(2차)>

- TBS는 2022. 1. 25. 의 뉴스공장에 (전 협회장)을 출연시켜 ' '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여사를 본인이 과거에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고, 2022. 2. 21. 재차 를 뉴스공장에 출연시켜 허위주장을 반복하여 방송함
- 이는 여사의 명예를 짓밟고 인격살인을 저지른 행위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써 「방송법」 제5조(방송의 공적 책임) 및 제6조(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) 등을 위반한 것임
- 따라서 를 출연시킨 대표, 씨 등 TBS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,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

## 2. 조사개요

○ 조사기간 : 2022. 8. 23. ~ 10. 7.

○ 조사인원 : 조사1팀장 외 6명

○ 조사대상 :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

○ 조사범위 : 제보내용 사실관계 여부 확인

○ 조사방법 : 관계 서류 검토 및 관계자 면담 등

## 3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 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기관 경고 | 고발 (인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 분 상 조치인원 | 재 정 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환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17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5 (기관장 경고1) | - | - | 11 | 1 | - |

# 4. 서울시자살예방센터·서울여성공예센터 감사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‘서울시A센터·B센터’는 민간위탁 이후 현재까지 미수감 시설로써 종합성과평가결과 하위기관으로 감사 필요

○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절차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실시함

## 2. 추진내용

○ 감사대상 : A센터(市 정신건강과), B센터(市 양성평등담당관)

○ 감사기간 : 2022. 7. 25. ~ 9. 16. (기간 중 23일)

○ 감사인원 : 감사3팀장 외 5명 (공익감사단 3명 별도)

○ 감사범위 : 2019. 1. 1.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

## 3. 감사중점

○ 민간위탁사무 관리·운영 분야(위·수탁 협약사항 이행실태, 이용자 관리 등)

○ 조직·인사, 예산·회계, 계약 등 일반행정 분야(직원 채용, 예산집행, 위원회 운영 등)

○ 각종 시설물 유지·관리 분야(건축물 안전관리, 시설 공간활용, 하도급 등)

○ 수탁기관 관리·감독 분야(입주기업 계약연장·실적관리·공모사업 추진 등)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모범사례 (인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 분 상 조치인원 | 재 정 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회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23 | - | 4,872 | - | - | 2<br>4,872 | 1<br>4,872 | - | 1 | 13 | - | 1 | 7 | - | - |

※ A센터 12건, B센터 11건 (총 건수에는 현지조치 6건 미포함)

## □ 총 평

○ 이번 감사는 A센터(市 정신건강과), B센터(市 양성평등담당관)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그간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의 보완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2. 7. 25.부터 9. 16.(기간 중 23일)까지 실시하였음.

○ 감사결과, 위탁사업비 횡령 및 유용 등 중대 비위는 없었으나 위·수탁 협약 검토 이행 부적정(A센터), 일반관리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정(A센터), 수의계약 분할발주 등 부적정(A센터), 입주기업 모집 부적정(B센터),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 부적정(B센터)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와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총 23건(현지조치 6건 별도)이 지적되었음.

- 행정상 조치(23건) : 시정 2건, 주의요구 13건, 권고 1건, 통보 7건

○ 이상과 같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민간위탁시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시 주관 부서의 지도·감독 소홀과 민간위탁시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주의·시정 요구 등을 시행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음.

# 5. 서울디지털재단 종합감사

## 1. 감사 배경 및 목적

❍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추진 및 관리·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·개선하고, 기관의 역할·기능

## 2.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서울디지털재단,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, 공기업담당관

❍ 감사기간 : ’22. 5. 2. ~ 5. 24.(기간 중 예비감사 5일, 본감사 10일)

❍ 감사인원 : 공공감사2팀장 등 9명(공익감사단 4명 포함)

❍ 감사범위 : 2017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

## 3. 감사 중점 사항

❍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적정성

❍ 회계, 예산(세출·세입) 편성 및 집행 적정성

❍ 인사(채용), 복무 등 관리·운영 적정성

❍ 계약 및 기타 행정 적정성 등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분상 조치 | 재정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징 (환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
| 22 | 6 | - | - (-) | - (-) | - (-) | - (-) | - (-) | - (-) | 15 (6) | 1 | - | 6 | - (-) |

# 6.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운영 감사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경영평가 하위등급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설립목적 부합 기능수행, 견제·감시시스템 운영, 예산·회계 등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비효율·방만경영 개선

## 2. 감사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, 市 평생교육국, 미래청년기획단

○ 감사기간 : 2022. 7. 20.(수)~8. 19.(금) *기간중 17일

○ 감사인원 : 공공감사1팀장 등 6명 (공익감사단 1명 별도)

○ 감사범위 : '19.1.1.부터 추진한 기관운영 전반

## 3. 감사중점

○ 조례·정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수행, 중복사업 여부

○ 예산·조직·인력·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여부

○ 인사·채용(신규 및 정규직 전환 등) 과정의 적정 여부

○ 회계·계약업무(불공정 계약 관행)·물품관리 등 적정 여부

○ 시 주관부서 및 재단 내부(이사회 등) 통제·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 여부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문책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기관 경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 분 상 조치인원 | 재 정 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회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20 | 8 | 3,056 | 0 (0) | 0 (0) | 1 (3,056) | | | 1 (3,056) | 11 (8) | 0 | 0 | 8 | 0 (0) | 0 |

※ 현지조치 10건 별도

## □ 총 평

○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에 대해 설립목적 부합한 기능수행, 견제·감시 시스템 운영, 예산·회계 등 비효율·방만경영 등을 중점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음

○ 진흥원은 평생교육 정책개발,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,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'15년 3월 설립되었으며, 정책과제 연구, 시민대학 및 모두의 학교 운영, 문해교육, 자치구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임

○ 감사 결과, 진흥원에서 수행한 업무 중 ① 타 평생교육 제공기관과 차별성 없이 유사·중복되거나 지역·교육성격별 편중된 교육과정 운영 ② 장기적 계획 없는 조직 운영 및 조직개편 절차 부적정 ③ 보조금(지원금) 관련 지침 미비 및 우리동네 책방배움터 사업 수입금 관리 부적정 ④ 기타 예산·계약· 채용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 기관운영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20건이 확인되었음

○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고,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담당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였으며

○ 특히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음

※ 현재 행정상 조치 20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,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8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음

만전을 기하여 주시고, 직원교육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(주의)**

# 7.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감사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공원녹지 시설물 및 서울대공원의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코자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

## 2. 추진내용

❍ 감사대상 : 동부공원여가센터, 서부공원여가센터, 서울대공원

❍ 감사기간 : 2022. 9. 1. ~ 10. 6. (기간 중 21일)

❍ 감사인원 : 안전감사 3팀장 등 5명

❍ 감사범위 : '19년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

## 3. 감사중점

❍ 공원 내 시설공사 안전관리 적정이행 여부 확인

❍ 조경·녹지시설물 관리 시 근로자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

❍ 공원 내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관리, 준공처리 적정성 확인

❍ 물품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업무 적정성 검토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 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모범 사례 (인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 분 상 조치인원 | 재 정 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회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35 | 13 | 3,865 | - | - | 9 | 2 (3,584) | | 7 (281) | 15 (13) | | | 11 | - | - |

# 8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서울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추진 및 관리·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·개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

## 2. 추진 내용

○ 감사대상: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市 복지정책과

○ 감사기간: 2022. 6. 27. ~ 7. 22.(기간 중 20일)

○ 감사인원: 공공감사2팀장 등 8명(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포함)

○ 감사범위: 설립일('19. 2월)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
※ 채용분야의 경우 기 실시한 채용실태 점검을 고려, '21. 1월부터 현재까지로 함

## 3. 감사 중점사항

○ 목적사업 추진의 적정성

○ 예산(세입·세출) 편성 및 집행 실태, 재정경영 상태의 적정성

○ 조직 및 인사 관리·운영의 적정성

○ 계약업무(공사, 용역, 물품구매) 추진의 적정성

○ 그 밖에 동향(언론보도, 시의회 지적 등)과 관련한 전반사항 점검 등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명, 천원)

| 합 계 | | | 변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분상 조치 | 재정상 조치금액 | | | 소계 | 추징 (환수) | 감액 | 기타 | | | | | |
| 15 | 3 | 57,977 | - | - | 1<br>(57,977) | 1<br>(57,977) | - | - | 4<br>(3) | 1 | - | 9 | - |

※ 기관경고 2건(서울시 사회서비스원), 현지조치 6건 미포함

# 9. 2021년 일상경비 이행실태 및 미의뢰 사업 점검

## 1. 점검 목적

○ 「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」 제12조(일상감사 관리)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실태 및 미의뢰 사업 점검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

## 2. 추진내용

○ 점검기간 : 2022. 9. 26. ~ 11. 30.

○ 점검대상

1) 일상감사 이행실태 : 2021년 일상감사 시정·보완 사업 412개

2) 일상감사 미의뢰건 : 2021. 7월 ~ 12월 중 추진사업

○ 점검인원 : 일상감사팀장 등 4명

○ 점검방법 : 서면확인

## 3. 중점 점검사항

○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업 반영 및 이행 여부

○ 감사의견 미반영에 따른 위법·부당한 사업결과 발생 여부 등

○ 일상감사 회피 목적 미의뢰 사업 유무 및 사업결과 적정 여부 등

○ 일상감사 실시·이행 관련 애로사항,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

## 4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| 합 계 | | | 변상 (금액) | 징계 (인원) | 시정(금액) | | | | 주의 (인원) | 권고 | 기관 경고 | 통보 | 고발 (인원) | 현지 시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건수 | 신분상 조치인원 | 재정상 조치금액 | | | 소 계 | 추 징 (회수) | 감 액 | 기 타 | | | | | | |
| 15 | | | | | | | | | | | | 15 | | |

# □ 총 평

□ 2021년 일상감사를 실시한 758개 사업 중 시정·보완 등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412개 사업에 대한 감사의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,

- 2016년 규정 시행 후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대체로 일상감사 의견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일부 사업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총 412개 사업 중 **13개 사업의 감사의견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**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
- 13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에 포함된 계약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지적사항을 경미하게 판단하여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가 철저하지 못하거나(8개 사업), 일상감사 절차의 숙지에 소홀하여 감사의견에 대한 재의뢰 및 재검토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거나(2개 사업),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(3개 사업)로 확인되었음

- 다만,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함으로 사업 결과에 중대한 위법·부당한 사정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음

**가. 일상감사 의견 이행 불철저**

- 물품 지명입찰을 추진하면서 '제한입찰과 혼용 불가' 의견을 잘못 해석
- 계약예규에 따라서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
-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

**나. 일상감사 의견 재의뢰 및 재검토 요청 미실시**

-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재의뢰 또는 재검토 대상사업을 사업부서가 임의로 추진

**다.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 이행 소홀**

-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재검토 요청사업에 대한 감사의견 조치 미흡

□ **2021년 하반기(7~12월) 계약, 보조, 위탁사업 중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을 점검한 결과,**

○ 2021년 7월 ~ 12월까지 처리된 계약업무(계약대장 6,731건),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(보조금관리시스템 2,338건) 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대상 여부와 비대상 사유, 대상인 경우에 일상감사 의뢰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, **계약업무 2건이 미의뢰**된 것으로 확인되었음

○ 미의뢰 사업 2건은 사업부서 담당자가 무리하게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거나, 일상감사 규정을 적정 숙지하지 못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

- 다만, 사업담당자 모두 일상감사 거부 의사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일상감사 규정 및 절차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

□ **이에, 일상감사 이행실태 조치 미흡 및 미의뢰 사업 기관에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고,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고자 함**

○ 계약업무 및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 기관(부서)는 향후 일상감사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일상감사 제도 안내와 감사사례 전파를 실시하여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